



Business and Human Rights Report 2025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인권경영보고



강남구도시관리공단
Gangnam-gu city management corp.

CONTENTS

I. 인권경영 추진체계 • 인권경영선언

인권경영 추진체계	4
인권정책선언	7

II.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9
주요 인권이슈 보고	21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	27

III. 구제절차

구제절차 소개	31
구제절차 운영성과	33

IV. 인권경영 교육

인권경영 교육 체계 및 성과	35
인권경영 교육 운영 성과	36

V. 종합적 평가 • 공개의 원칙 및 소통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38
인권경영 보고방식	41

APPENDIX

UN이행지침 인권보고 프레임워크	43
인권경영 보고 지침	44
유효성 검증 의견	45



I. 인권경영 추진체계 • 인권경영선언

1. 인권경영 추진체계 4
2. 인권정책 선언 7



강남구도시관리공단
Gangnam-gu city management corp.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이행지침

- 목적 :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구성 : 6장 39조(개정 : 2024.12.18)

인권경영 이행지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18. 12. 06. (예규 제1112호)
제1차 개정 2021. 12. 03. (예규 제1131호)
제2차 개정 2024. 12. 18. (예규 제117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 및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to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비차별) 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기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 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총 칙	인권경영 목적, 적용범위, 정의
인권경영 이행사항	인권경영의 이행,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안전 및 보건,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정보인권 보호 등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 현장, 기본계획 수립, 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교육 등
인권경영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및 의결 정족수, 소집,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비밀엄수, 위원의 해촉 등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조사의 방법, 신고인의 신분보장,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시정과 조치

■ 주요내용

- ✓ 인권경영현장(제17조) : 인권경영의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
- ✓ 인권교육(제21조) :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온라인·집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 ✓ 인권영향평가(제32조) :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
- ✓ 인권침해 구제(제6장)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등 누구나 신고 가능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책임

- 인권경영 담당관 : 안전감사팀장
- 인권경영 심의기구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심의 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 역할/ 소집 및 회의/ 의결사항의 공개 등

목적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 등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24조에 명시된 사항을 심의
기능	인권경영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피해자 구제 등 관련 공단의 인권경영정책 이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 수행
위원장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따라 외부위원 중 호선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포함 총 7명 • 내부위원(3명) : 본부장, 인권경영담당 부서장, 노동자 대표 • 외부위원(4명) : 변호사, 노무사, 노동인권 전문가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전담부서

안전감사팀

인권경영 담당(2025년)

안전감사팀(02-2176-0459)

인권경영 추진전략

01 로드맵

미션 : 인권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

~'26 인권경영 체계강화, ~'28 인권경영 정착 및 확산, '29~ 사회적 가치 창출

02 추진개요

비전 : 구성원과 구민 등 이해관계자가 존중받는 인권 중심의 공공서비스 실현

가치실현 : 지역주민 · 이용객 · 협력사 등 대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존중 문화확산

03 전략과제

- 인권경영 체계 확립 • 인권경영 시스템 활성화 • 인권교육 실시 • 구제지원센터 운영
- 인권경영 추진단 및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경영 교육 실시,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04 모니터링

- 매년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리스크 도출 및 개선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부문
-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실태조사 실시), 인권경영 진단 및 개선활동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선언 및 공표

인권경영선언 주요내용

제정	분야별 내용 마련, 부서별 의견 수렴, 인권경영선언
목표	공단이 추구하는 인권경영이념을 담은 항목 실천
구성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 등 반영
내용	세계인권선언 존중 및 지지 고객 인권 존중 고용상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강제노동, 아동노동 금지,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 준수 노조활동 존중, 고용안전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노력 계약 상대방 공정 대우 및 지역사회 내 인권경영 확산 노력 개인정보보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 인권 최우선 환경 조성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 노력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 사전예방 노력
참여	임직원 인권의식 조사, 부서별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자문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공단 홈페이지 내 인권경영선언문 게시 ·공단 내부망을 통한 인권경영 정책 등 홍보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인권경영담당관 지정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 기여에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강남구민 및 고객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성별, 나이, 장애, 학력,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며 조직 내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존중하며, 고용안전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도급사를 비롯한 계약 상대방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참여자 및 지역사회 내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며 사적 이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공평한 정보 접근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II. 인권영향평가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9
2. 주요 인권이슈 보고 21
3.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27



강남구도시관리공단
Gangnam-gu city management corp.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추진배경

01

이해관계자 인권보호에 대한 국내 · 외
동향 및 사회적 요구 증대

0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선도 요구

03

공단의 인권경영 추진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

04

글로벌 동향에 따른 ESG경영 및 인권실사에
대한 중요성 부각

추진범위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계획 · 이해관계자 식별 및 의견수렴 · 기관 현황조사 · 관련부서 교육 · 현장점검 등
- 중대성 평가 : Step 1. 이슈파악 - Step 2. 이슈 우선순위 결정 - Step 3. 핵심이슈(과제) 도출 및 유효성 검증

추진기간 및 대상

추진기간	구분	대상	담당부서
25. 08. 18 ~ 25. 10. 10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추진체계	안전감사팀, 경영관리팀, 시설관리팀, 경영기획팀
25. 09. 01 ~ 25. 10. 17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안전감사팀, 체육사업1팀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추진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세부절차 및 내용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실시



세부절차 및 주요내용

STEP 01
사업 계획

추진계획 수립

- 수행주체 구성
- 평가대상 선정
- 부서별 인권 담당자 선정
- 사업선정(주요사업)

STEP 02
교육 및
의견수렴이해관계자 식별
영향도 고려

- 인권경영 소개
- 회사 및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식별
-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정하기
- 부서별 의견수렴

STEP 03
주요
인권이슈
파악부정적 인권영향 ·
실제적 · 잠재적
인권 이슈

- 국제표준 주요이슈 및 인권위 매뉴얼 적용
- 인권이슈 우선순위 정하기

STEP 04
체크리스트
작성·평가체크리스트 제작
논의 · 평가

- 체크리스트 설계
- 지표별 근거마련
- 분야별 진단
- 핵심과제 도출
- 개선계획 수립

STEP 05
보고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개선

- 제3자 검증
- 결과보고 및 공개
- 개선조치 이행

직전년도 인권경영 이슈 및 개선성과

- 인권경영 체계강화(인권경영 기준 정비, 세부 실행과제 도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환경보호 활동/공급망 관리 강화 등)
- 인권경영 종장기 로드맵 개정(공급망 관리 강화, 인권교육 강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주요이슈 도출 및 개선)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과제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이행·보고

핵심이슈	주요대상	추진성과	담당부서
성과공유 및 개선 점검	대내외 이해관계자	<p>(2025~2029)인권경영 중장기 계획 개정('24.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실행전략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p>'25년 인권경영 실태조사 실시(한국인권경영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 실태 조사 - 주요이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보고 <p>'24년 인권경영 실적 보고(내부공개)</p> <p>'25년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가 유효성 검증(한국인권경영연구소)</p>	안전감사팀
공단 조직문화 진단과 괴롭힘 발생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존중 개선과제 도출	임직원	<p>25년 인권경영 실태조사 실시(한국인권경영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 실태 조사 - 주요이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보고 <p>'25년 인권경영 교육 및 캠페인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사이버 인권교육 실시 - 갑질 극복 및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상호존중 교육 실시 - 인권경영 캠페인 실시 	안전감사팀
ESG경영 체계 및 환경보호 활동 강화	대내외 이해관계자	<p>ESG경영 체계구축 및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경영 중장기 계획 개정('24.12) - ESG경영 전략체계 구축(환경포함 비전, 목표, 중장기 로드맵, 전략과제) 및 계획수립('25) -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 공사, 스마트 친환경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25) 	안전감사팀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협력사 인권 모니터링 강화	대외 이해관계자	<p>공급망 관리 강화 : 협력업체 의견수렴, 인권실태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간담회 개최('25) - 주요 협력사 선정 및 인권경영 실태조사 실시('25) - 협력업체 계약 시 공정거래 참여 안내를 발송 	안전감사팀 각 사업부서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금차년도 평가 팀 구성

주관부서	대상	담당부서	진단평가	심의기구
안전감사팀	기관운영(인권경영체계)	안전감사팀, 경영관리팀, 시설관리팀, 경영기획팀	한국인권경영연구소	인권경영위원회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안전감사팀, 체육사업1팀		

이해관계자 참여

-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담당부서 교육 및 이해관계자 식별, 부서별 주요이슈 점검 및 기관현황·잠재적 리스크 관련 의견수렴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진단 지표)를 통한 진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이슈 추가 반영

1

2

3

4

이해관계자 식별

- 관련부서 교육 및 의견수렴
(기관운영) 안전감사팀, 경영관리팀, 시설관리팀, 경영기획팀
(주요사업) 안전감사팀, 체육사업1팀
- 이해관계자 정의
이해관계자↔사업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 고려

우선순위 정하기

-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논의
-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은 그룹
 - 이해관계자 범위 선정
- 주요 이해관계자 선정 결과
 - 임직원 / 공급망(협력사, 외부소속 종사자) / 이용자(지역민, 구민) / 산업안전 / 환경 등(기관운영, 주요사업 공통 범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임직원 온라인 설문조사
- 부서별 담당 의견수렴
- 협력사 온라인 설문조사
- 주요사업 시설 종사자 의견조사
- 이용자 의견(민원사례) 조사
- 미디어 리서치(기관, 사업 관련)
- 외부 지적사항, 유관기관 자료
- 사회이슈(공공부문 주요이슈 등)

주요이슈 도출

- 인권경영 체계 정비
 - 구제절차 매뉴얼 제정
 - 구제절차 효율성 평가 실시
- 구제절차 및 처벌기준 강화
 - 구제절차 안내 강화(처리기한)
 - 인권침해 관련 내용 보완
- 법정의무 외 인권 교육 강화
- 공급망 지원 및 평가 강화
- 환경정책 개발 시 내외부 소통

※ 붙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다음 페이지)

불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 임직원 대상

■ 임직원 의견수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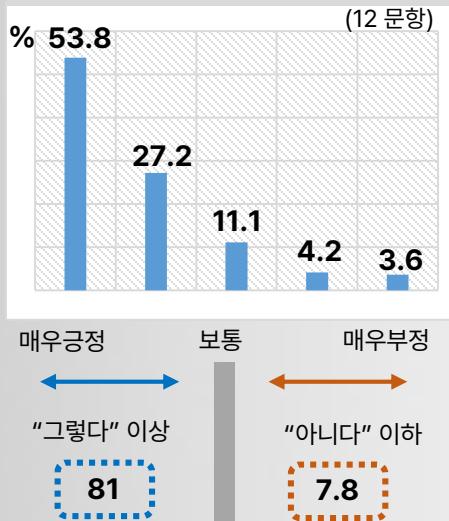
조사기간 : 2025.9.1. ~ 9.8. | 응답방법 : 온라인 | 표본 수 : 366명 | 응답자 : 115명 | 응답률 : 31.4%

문항 수 : 총 23개(선택식 22, 주관식 1) | 총 3개 분야 | 응답자 현황(%) : 여(36), 남(64) | 정규직(96), 비정규직(4)

인권의식 및 인권경영 제도

- 인권경영 의식, 리더십, 교육
- 근로권 보장, 고용상 비차별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산업안전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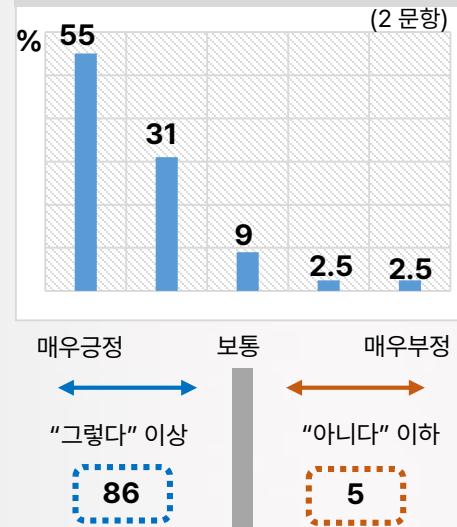
*인권의식 및 인권경영 제도(전체 평균)



직장 내 인권실태·교육 및 정책 수준

- 직장 내 갑질·괴롭힘 교육 및 정책 수준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및 정책 수준

*갑질·괴롭힘/성희롱 교육 및 정책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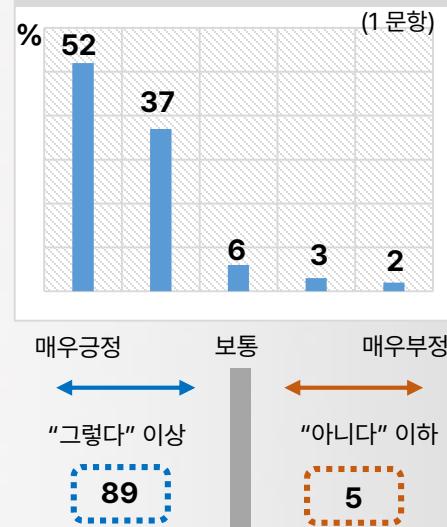


인권보호 대응체계

- 인권침해 신고·구제절차 인지 / 상담제도
-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응체계 분야

» '피해자 보호' - '2차피해 방지' - '징계·처벌 강화' 순

*고충처리 제도 인지



불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 임직원 대상

■ 임직원 의견수렴 결과

▶ 선택식 – 부정응답 상위

▶ 전반적으로 **부정응답은 10%대 내외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이슈도출을 위한 상위 “부정의견” 선정

부정응답률 ('아니다' + '매우 아니다') 이 비교적 높은 항목(TOP 부정의견)

응답수준(%)	
긍정응답	
'그렇다' 이상	'보통' 이상
이하	아니다

고용상 비차별

» 키워드 : “수평적 문화 조성 노력” 필요

자유로운 의견제시	Q) 인사, 사업 활동 등에 있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여부	72	83	17
-----------	---	----	----	----

감시/관리체계

» 키워드 : 대내외 “신고·구제제도&모니터링 점검” 필요

인권 감시체계	Q)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 및 관리체계> 작동의 적절성 여부	78	90	9
---------	--	----	----	---

대응체계

» 키워드 : “고용상 등 차별방지 노력” 필요

고용상 비차별	Q) 성별, 연령, 출신지, 장애 등으로 <차별하는 문화> 지양 여부	81	91	9
---------	--	----	----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기반, **인권경영 기본 조사 결과**(인권의식,리더십 및 제도화,인권교육,근로권보장/고용상 비차별,결사의 자유,산업안전,공급망 관리)
기관의 부정응답(아니다, 매우아니다) 평균은 7.8%이며, 상기 부정 응답률 상위 “부정의견” 은 이 평균(7.8%)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불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 임직원 대상

■ 임직원 설문 통계분석 – 주요항목 '응답수준' 현황

분야	항목	설문항목(요약)	응답수준(%)		
인권의식 및 인권경영 제도	인권경영 체계 구축			"그렇다" 이상	
	인권의식	<상호 인권존중 및 보호>에 대한 관심	82.0	93.0	7.0
		<임직원 인권보호 상황>	79.0	94.0	6.0
	인권경영 리더십 및 제도화	경영진의 <인권 존중 문화> 정착 노력	82.0	93.0	6.0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 및 관리체계>	78.0	90.0	9.0
	인권교육	<적절한 교육> 여부	86.0	94.0	6.0
		의무적인 <초과근무> 여부	79.0	90.0	10.0
	근로권 보장 / 고용상 비차별	승진, 배치, 휴직 등의 <남녀> 차별 여부	85.0	93.0	7.0
		<차별하는 문화> 지양	81.0	91.0	9.0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72.0	83.0	17.0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금지 현황	81.0	94.0	6.0
	산업안전	<휴식시간> 보장	81.0	94.0	6.0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 인권존중> 노력	86.0	96.0	4.0
평균			81.0	92.1	7.8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직장 내 인권실태 조사(갑질·괴롭힘·성희롱)			"그렇다"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괴롭힘 예방 교육 및 정책> 적절성	83	94	6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정책> 적절성	89	96	4.0
	평균		86.0	95.0	5.0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대응체계 (구제제도)	대응체계 인지		"그렇다" 이상	
		<고충처리 제도> 인지	89	95	5.0
		<신고방법 및 구제절차> 인지	83	94	5.0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상담제도>의 적절한 운영	75	93	7.0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적극적 대응	78	92	7.0

불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 공단 공급망 대상

■ 주요 협력사 대상 설문결과

조사기간 : 2025.9.1. ~ 9.8. | 응답방법 : 온라인 | 설문대상 : 70개(공단 협력사) | 응답수 : 21개(응답률 : 30%)

설문항목(요약)	주요 협력사 설문결과					가장 높음	차순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이하. 사업 파트너) 임직원의 인권경영 인지	43	38	10	5	5		
인권경영 제도 마련 여부		86		14			
ESG경영 체계 구축 여부		86		14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신고채널 및 구제제도> 운영		90		10			
인권 관련 <적절한 교육> 운영		95		5			
(이하. 공단) 사업 파트너에 대한 <상호존중> 노력		100		-			
공단 <대외 신고채널> 인지		90		10			
사업 파트너의 <비지니스 거래 및 관계> 만족도	52	43	-	5	-		
공단 대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 강화	협력사 지원 강화 (인권 교육, 제도 등)	협력사 지원 강화 (ESG경영 관련)	기타		
	48	14	19	5	5		

* 주요이슈 : 1) 공급망에 대한 인권·ESG경영 관련 “체계구축·교육·제도” 지원 강화
2) 사업 파트너에 대한 대외 이해관계자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

불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 주요사업 관련 파트너 대상

■ 주요사업 파트너 대상 설문결과

조사기간 : 2025.9.26. ~ 10.4. | 응답방법 : 온라인 | 설문대상 :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강사 등 사업파트너 | 응답수 : 4개

설문항목(요약)	그렇다(%)	주요사업 관련 파트너 설문결과		가장 높음	차순위
		아니다(%)	없음		
강사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경영 인지	4				
고객 및 타직원 등으로부터의 인권보호 체계(고충상담 및 신고채널) 마련 여부	4				
방문객 등 시설 이용객에게 폭언 등 언어적 폭력 행위를 당한 경험(2024~2025년 기준)	2		2		
방문객 등 시설 이용객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험(2024년~2025년 기준)	1		3		
공단 인권경영 관련(법정의무 교육 포함) <교육 혹은 프로그램> 참여 여부	3		1		
공단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 인지 여부	3		1		
공단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의 <상호존중> 관계	4				
비즈니스 관계나 인권 관련해서 <건의사항>		없음			

* 주요이슈 : 1) 방문객 등 시설 이용객으로 부터 언어적·물리적 폭력 경험 - “보호체계” 강화 필요
2)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영향평가 개요

▶ 인권영향평가 종류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공단의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대비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공단 사업 및 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파악하고, 위험요소 개선 수행

▶ 인권영향평가 기준

- » (평가방법) 각 부문별 인권 담당자 대상 인권영향평가 교육 후 서면조사 및 평가 실시

- » (평가기준) 각 지표 별 추진실적 및 준비정도가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평가(법규준수, 내규·매뉴얼, 시스템·활동 등)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 (점수도출) 지표점수를 100분위로 환산하여 전체점수 도출

구분	1	2	3	4	5	6	7	8	9
평점	100~90점	89~80점	79~70점	69~60점	59~50점	49~40점	39~30점	29~20점	20점 미만

- » (산출방식) 점수제 or 등급제 or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SA) 등 평가기관에 따라 다양한 방식 존재
 - 점수보다는 리스크를 발굴하여 개선해 가는 노력이 중요(점수 자체로 기관 간 / 부서 간 비교 불가)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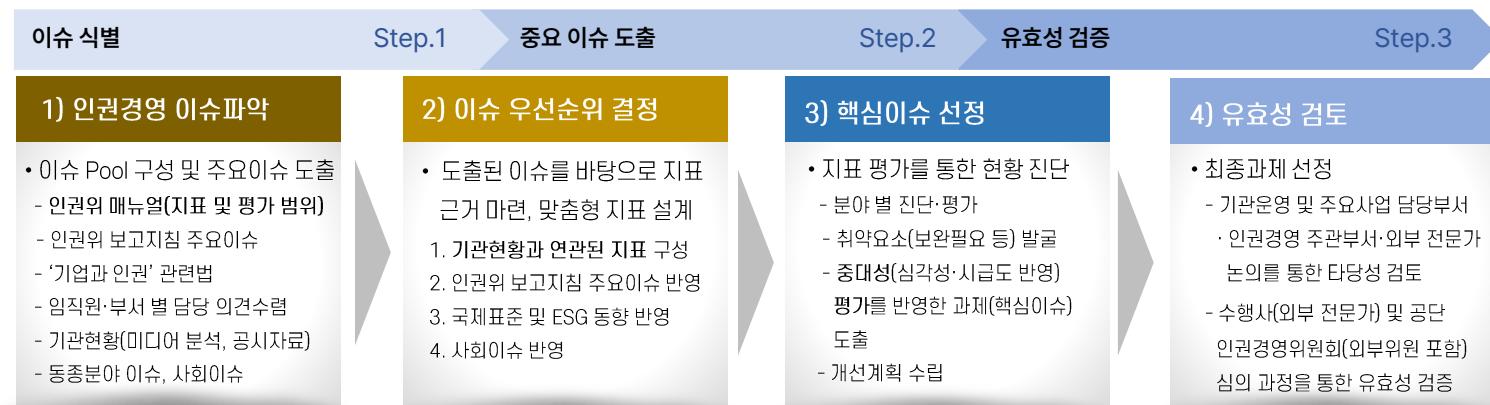
인권영향평가 개요

- 국가인권위 매뉴얼 및 신규지침 · 기관현황 · 주요사업 현황 · 사회이슈 등을 종합 반영한 진단지표 마련

- 중대성 평가* 과정을 통한 핵심이슈(최종과제) 선정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유효성 검증 진행

* 국가인권위 중대성 평가 권고 : 이해관계자의 인권영향평가 참여(의견수렴 및 이슈도출 등) 및 최종과제 도출과정 공개

✓ 평가과정



▶ 인권영향평가 이슈 Pool 및 주요이슈

구분	이해관계자 범위	주요이슈
인권위 매뉴얼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고객/환경	인권경영체계/고용상비차별/결사 및 단체/산업안전/공급망/환경 등
인권위 보고지침 이슈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고객/환경	교육강화(법정의무 외 추가·다양한 방법), 인권경영 보고체계 등
기업과 인권 관련법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고객/환경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남녀고용평등법, 중대재해법, 산재보험법 등
임직원 의견수렴 결과	임직원/자회사/협력사/지역사회/고객/환경	자유로운 의견제시 문화 조성, 적절한 교육 운영, 고충처리 활성화 등
기관현황 / 사회이슈	임직원/자회사/지역사회/고객/환경	기관 공시자료(홈페이지 등) / 근로권 보장 – 업무시간 외 연결차단(사회이슈)

주요이슈 융합 및 진단범위 설정(공통)

- 중대성 평가를 통한 주요이슈 도출 및 이슈 융합
- 관련부서·외부 전문가 논의 과정을 통한 핵심이슈 선정(심각성·시급성 반영)



지표 범위 설계 및 이슈 선정

체크리스트(지표) 제작
·진단·핵심이슈도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기반
- 인권위 신규지침 반영(인권교육)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보완·신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인권경영 범위 내 맞춤 지표 마련
- 효율적 사업 운영관리 체계
- 시설 등 안전관리 현황
- 안전 등 취약요소 발굴 및 개선
-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 책임있는 공급망 지원/관리
-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2. 주요 인권이슈 보고 » 금차년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소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1-2)

- 총 10개 분야 – 32개 항목 – 135개 세부 평가지표 마련
- 지표특징 : 인권위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관 현황에 맞게 일부 내용 수정 운영

신규 수정 삭제

구분	분야	평가항목	변동내역(인권위 매뉴얼 대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체제구축(6)	인권존중 정책 선언(6)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5)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5)	인권위 보고지침 반영(리스크 진단체계 강화)
		인권경영 성과(7)	
		구제절차 마련(7)	
		인권교육 실시(2)	인권위 보고지침 반영(추가)
	고용상 비차별(4)	고용상 비차별(5)	
		고용상 남녀 비차별(6)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2)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4)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4)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5)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3)	무관 지표 제외(기관현황 반영)
	강제노동의 금지(1)	강제노동 금지(7)	사회이슈 추가 : 연결 차단권
		사업파트너의 강제노동 예방	분야 7로 통합(이동)
	아동 노동의 금지(2)	연소자 고용금지(2)	일부 무관지표 제외(기관현황 반영)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7)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2-2)

- 총 10개 분야 – 32개 항목 – 135개 세부 평가지표 마련
- 지표특징 : 인권위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관 현황에 맞게 일부 내용 수정 운영

신규
수정
삭제

구분	분야	평가항목	변동내역(인권위 매뉴얼 대비)
기관운영	산업안전 보장 및 중대재해 예방(4)	작업장 안전(4)	중대산업재해 관련 지표 추가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4)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5)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3)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3)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2)	일부 지표 통합(내용 중복)
		모니터링 실시(2)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4)	일부 무관 지표 제외(기관현황 반영)
	현지주민의 인권보호(2)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4)	일부 무관 지표 제외(기관현황 반영)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3)	일부 무관 지표 제외(기관현황 반영)
	환경권 보호(4)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5)	
		환경정보의 공개(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5)	
		비상계획 수립(5)	
인권영향평가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3)	노동자 보호 강화(4)	인권경영 주요이슈 반영(신규)
		고객 인권 보호(3)	고객 소통, 개인정보보호 등 추가(신규)
		공공 정보 공개(3)	경영정보 공시, 정보 공개 추가(신규)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지표구성 : 총 2개 분야 – 6개 항목 – 16개 세부지표 마련
- 지표특징 : 인권경영 범위 내 '사업운영 체계구축 및 관리'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분야 마련

01

『사업운영 체계구축 및 관리』 사업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효율적 사업운영, 안전관리 사항 점검

02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노동자, 사업 파트너, 이용객 등의 인권보호,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점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25)

주 요 사 업 인 권 영 향 평 가	대상사업	평가분야	평가항목
		사업운영 체계구축 및 관리(8개)	체계구축(2) 운영관리(3) 안전관리(3)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8개)	노동자 인권보호(2) 공급망 관리(2)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4)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진단결과(2025)

- 분야별 진단을 통한 취약요소 발굴 - 취약요소 포함 인권경영 전체 범위 내에서 이슈 도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진단결과('25)

번호	주제	내용	담당부서	전체지표 수	유효지표 수	진단결과	
						점수	점수(백점환산)
1	인권경영 체계 구축(32개)	10개 분야 32개 항목, 총 135개 지표	안전감사팀	32	32	62	96.88
2	고용상의 비차별(15개)		경영관리팀	15	15	30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13개)		경영관리팀	13	13	26	100
4	강제노동의 금지(7개)		경영관리팀	7	7	14	100
5	아동노동의 금지(9개)		경영관리팀	9	2	4	100
6	산업안전 보장 및 중대재해 예방(16개)		시설관리팀, 안전감사팀, 경영관리팀	16	16	32	100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8개)		안전감사팀, 경영관리팀, 시설관리팀	8	8	15	93.8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7개)		안전감사팀, 시설관리팀	7	7	14	100
9	환경권 보장(18개)		경영기획팀, 시설관리팀	18	18	35	97.22
10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10개)		경영관리팀, 시설관리팀, 안전감사팀	10	10	20	100
합계(평균)				135	128	252	98.78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진단결과(2025)

- 분야별 진단을 통한 취약요소 발굴 - 취약요소 포함 인권경영 전체 범위 내에서 이슈 도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진단결과('25)

2개 분야	항목(6개 항목, 총 18개 세부지표)	담당부서	유효지표 수 (= 전체 수)	진단결과	
				점수	점수(백점환산)
1 사업운영 체계구축 및 관리 (8개)	1) 체계구축(2개)	체육사업 1팀	2	4	100
	2) 운영관리(3개)	체육사업 1팀	3	6	100
	3) 안전관리(3개)	체육사업 1팀	3	6	100
4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8개)	1) 노동자 인권보호(2개)	안전감사팀 체육사업1팀	2	3	75
	2) 공급망 관리(2개)	안전감사팀 체육사업1팀	2	3	75
	3)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4개)	체육사업 1팀	4	8	100
합계(평균)				16	30
점수(백점환산)				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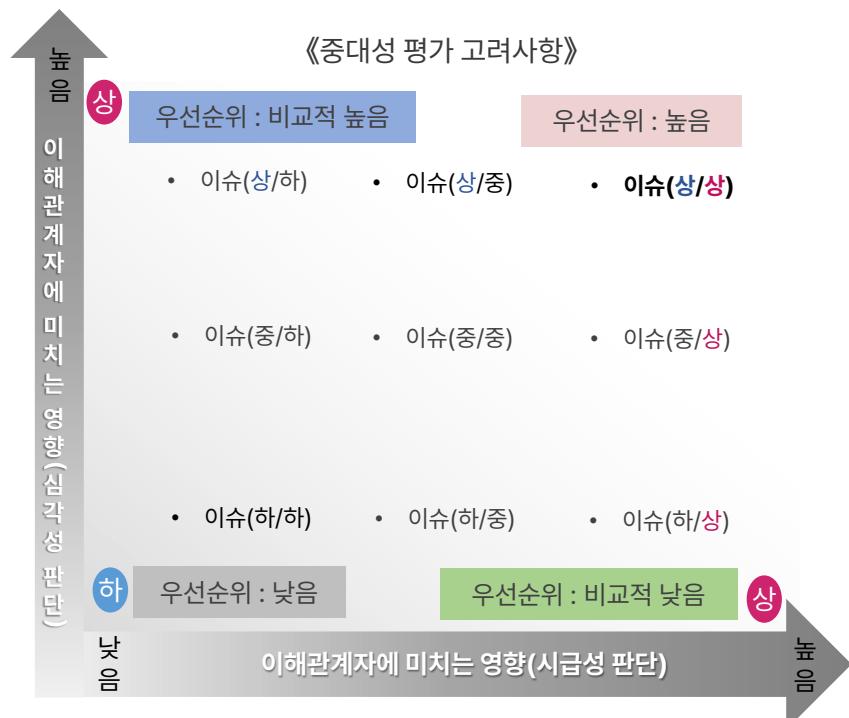
2. 주요 인권이슈 보고

» 인권영향평가 결과

핵심이슈 선정을 위한 중대성 평가(2025)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대내외 동향 등 주요이슈에 대해 공단-외부 전문가 상호 논의를 통한 중대성평가 실시
→ 심각성·시급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핵심이슈(과제) 선정 과정 진행

▶ 중대성 평가



도출 이슈	평가사		공단(부서장)		공단(담당)		최종과제 (모두 '상' 우선)
	심각성	시급성	심각성	시급성	심각성	시급성	
이슈 1	중	상	중	중	중	중	X
이슈 2	중	중	중	하	중	중	X
이슈 3	상	상	상	상	상	상	O
이슈 4	상	상	상	상	상	상	O
이슈 5	상	중	상	중	상	중	O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기관운영)

도출된 이슈에 대한 중대성(심각성·시급도 고려) 평가 과정(각 부서 및 외부 전문가 논의)을 거쳐 핵심이슈(최종과제) 선정

【핵심이슈 선정 범위】 인권영향평가 진단 결과 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요이슈 및 대내외 인권경영 동향 등 종합 반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핵심이슈 및 개선계획('25)

No	분야	대상	핵심이슈	이슈배경	개선계획
1	구제제도	대내외 이해관계자	구제절차 효용성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구제제도 강화	구제절차 효용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등 기준마련 필요	구제제도 강화 1) 구제절차 매뉴얼 제정 2)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구제절차 효용성 평가 실시 - 구제절차 효용성 평가 지표 개발 - 신고 및 구제절차 관련 임직원, 사업 파트너 포함 의견수렴 - 구제절차 효용성 평가 및 과제에 대한 개선 이행
2	구제절차 안내	대내외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편의성 증대 차원의 "구제절차 안내" 강화	구제절차 안내 강화를 통한 신고자 배려 차원	구제 처리과정의 이해관계자 정보청구권 등 사전 대응을 위한 "구제절차 안내" 강화 - 관련 지침, 매뉴얼, 신고센터 내 처리기한 안내
3	인권 교육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정의무 외 교육 강화	인권위 지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반영 (인권 교육 지속)	법정의무 외 인권 교육 강화 *계층별 교육(고위직/관리자/일반직원 대상) 실시 - 일반직원 대상 '인권경영의 이해' 교육 실시 - 관리자 포함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 교육 실시 - 매년 지속 실시 계획
4	공급망 관리	대외 이해관계자	공급망 교육 및 평가 지원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는 대내외 기조 반영	공급망 교육 지원 및 평가 1) 협력사 등 주요 사업 파트너 선정 및 인권경영(ESG내용 포함) 계획 수립 2) 공급망에 대한 교육 실시(공급망 교육 지원) 3) 공급망 대상 맞춤형 평가(인권/ESG 내용 포함) 지표 개발 4) 공급망 평가 및 개선/보고/ 정보 공개 활동 수행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강남구스포츠문화센터)

도출된 이슈에 대한 중대성(심각성·시급도 고려) 평가 과정(각 부서 및 외부 전문가 논의)을 거쳐 핵심이슈(최종과제) 선정

【핵심이슈 선정 범위】 인권영향평가 진단 결과 외 현장점검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요이슈 및 사회이슈 등 종합 반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핵심이슈 및 개선계획('25)

No	분야	대상	핵심이슈	이슈배경	개선계획
1	공급망 관리	대내 이해관계자	공급망 내 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휴게·편의공간 개선	시설 종사자 복지 증대 등 이해관계자 배려 차원	공급망 내 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휴게·편의공간 개선 1) 맞춤형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공급망 이해관계자 정기 의견수렴 (매월 회의 시, 강사, 지도자 등 휴게공간 사용 대상자 포함) 2) 의견 반영을 통한 휴게 공간 등 편의시설 정기 점검 및 개선 활동 예) 노후 장비/시설, 안전/위생, 냄새/습도 관리 등 쾌적한 환경 조성
2	노동자 보호	대내외 이해관계자	방문객으로부터의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강화	시설 내 종사자 의견수렴 반영 (방문객으로부터의 언어적/물리적 폭력 경험 존재)	방문객으로부터의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강화 1) 언어적/물리적 폭력 발생 시, 관리자 보고 및 보호조치 의무화 2) 시설 종사자 대상 정기 모니터링 실시(분기별 실태조사 - 의견수렴) 3) 시설 종사자 대상 연 1회 이상 "감정노동 보호 및 대응 교육" 실시 4)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 "직원 폭언·폭행 시 이용제한 및 신고 가능" 안내문 게시 강화
3	공급망 관리	대외 이해관계자	인권경영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파트너 의견수렴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대내외 중요성 부각	인권경영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파트너 의견수렴 및 구제절차 홍보 * 강사, 비정규직 종사자 등 시설 내 종사하는 사업 파트너 대상 - 인권경영 소개, 인권경영 의견수렴, 구제절차 안내 - 정기적으로 지속 추진 계획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주요 인권이슈 보고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이해관계자 요청 반영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특별히 도출된 이슈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분야	대상	핵심이슈	현황 및 개선계획
인권교육	대내 이해관계자	법정의무 외 교육 강화	<p>✓ 현황[담당 : 안전감사팀] - 법정의무 인권 관련 교육 시행</p> <p>▷ 개선계획 »계층별 교육(고위직/관리자/일반직원 대상) 실시 1) 일반직원 대상 '인권경영의 이해' 교육 실시(~'25) 2) 관리자 포함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 교육 실시(~'25) 3) 매년 법정의무외 교육 지속 실시 계획</p>
노동자 보호	대내외 이해관계자	방문객으로부터의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강화	<p>✓ 현황[담당 : 체육사업1팀] - 언어적/물리적 폭력 발생 시 관리자 보고 및 보호조치, 관련 교육 및 안내 실시</p> <p>▷ 개선계획 »방문객으로부터의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강화 1) 언어적/물리적 폭력 발생 시, 관리자 보고 및 보호조치 의무화 2) 시설 종사자 대상 정기 모니터링 실시(분기별 실태조사 - 의견수렴) 3) 시설 종사자 대상 연 1회 이상 "감정노동 보호 및 대응 교육" 실시 4)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 "직원 폭언·폭행 시 이용제한 및 신고 가능" 안내문 게시 강화</p>

III. 구제절차

1. 구제절차 소개 31
2. 구제절차 운영성과 3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Gangnam-gu city management corp.

1. 구제절차 소개

» 인권침해 구제절차 내용

진정 제기절차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를 위한 제도운영(인권경영 이행지침 및 구제절차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대응 전담부서 지정 · 운영)

신고대상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등
- 갑질신고센터(별도 운영)

신고안내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제36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
- 사건의 피해자·제3자·관계자가 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감사실 - 인권침해구제지원센터)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직접접수(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신고 가능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 접수
- 이메일 접수 : dlaekdls77@gncity.or.kr (안전감사팀)

인권침해 신고

- » 인권침해 신고
 - 갑질, 차별 행위, 자유권 미보장 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 확인

- » 인권침해 여부 확인(안전감사팀)
- » 신고자 신분보장, 비밀유지

조사개시(접수 건)

- » 인권경영 담당부서(즉시 조사)
 - 업무분장에 따른 유관부서 확인

경영진 보고

- » 인권경영위원회 상정·심의 의뢰
- » 법률, 인권 등에 대한 검토
 -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심의·의결

-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
 - 외부위원 포함
- »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시정조치

- » 시정조치 이행(징계·인사조치 등)
- » 신고자에 결과 통보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구제절차 소개

구제절차 운영성과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1. 구제절차 소개

» 인권침해 구제절차 내용

구제절차의 효과성 제고 및 신고인 보호 제도

구제절차의 독립성 확보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01

02

03

구제기준 마련 및 독립성 확보

System 1. 구제기준 제정 및 신고채널 운영

- 인권경영 이행지침 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 홈페이지 인권침해구제지원센터 마련 및 구제절차 안내

System 2. 구제절차 효과성 점검 및 구제제도 홍보

- 구제절차 강화를 위한 구제절차 효용성 점검 및 평가 계획
- 사업 파트너 대상 인권경영 소개 및 인권침해 신고채널 홍보

System 3.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의결 독립성 강화 노력

- 인권경영위원회 - 분야별 외부위원 참여
- 인권침해 관련 사안 처리·심의의 독립적 역할 수행

운영현황

- 대외 구제 진정 건수 : 없음('25년 기준)
-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인권침해
예방활동

-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화(인권경영 이행지침 및 선언문 정기 점검, 부서별 인권경영 추진 담당 지정을 통한 관리)
- 잠재적·실제적 인권 리스크 발굴 및 개선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매년 시행
- 임직원 등 내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 및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원 지정, 구제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
- 사업 파트너 등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 신고채널 마련
- 인권경영의 독립적 심의·의결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외부위원 참여)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구제제도 정기 점검 및 리스크 개선을 통한 구제제도 개선 활동 수행


 구제제도
개선노력

-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인권침해 관련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 정기 점검 및 개선 활동
- 인권침해 대응체계 관련 임직원 및 사업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구제제도 점검 및 개선 활동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매년 실시 및 구제제도 관련 이슈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 구제기준(인권경영 이행지침 등) 정기 점검 및 개선, 구제제도 강화를 위한 구제절차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IV. 인권경영교육

1. 인권경영 교육 체계 35
2. 인권경영 교육 운영성과 36



강남구도시관리공단
Gangnam-gu city management corp.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인권경영 교육 체계

인권경영 교육 운영성과

종합평가·공개·소통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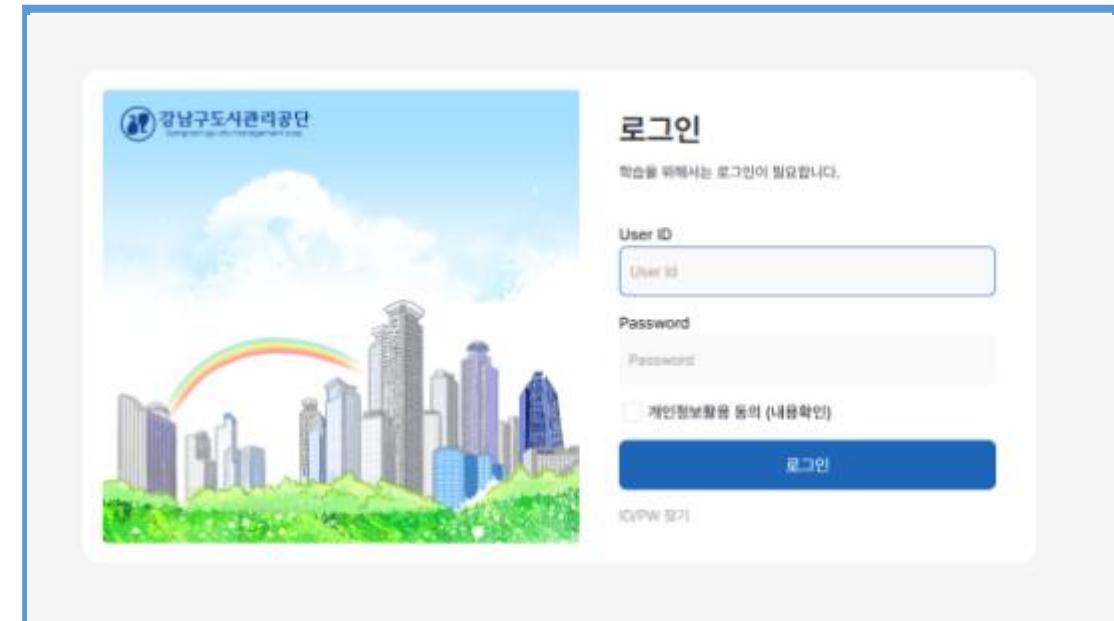
- 인권경영 이행지침(제21조 인권교육)
 - 임직원 대상 연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다양한 주제로 온라인·집합교육 등 방법 활용

전담부서

- 안전감사팀

전산 시스템

- 교육 플랫폼 운영
 - 온라인 교육 수강
 - 인권 관련 교육 포함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인권경영 교육 체계

인권경영 교육 운영성과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교육 실시

- 외부 강사를 통한 임직원 대상 계층별(관리자/일반 직원) 교육 시행
- 교육 주제 : “인권경영의 이해”

교육내용

- 인권경영 소개(역사, 동향, 범위 등), 벤치마킹 전략, 인권침해 사례 등

교육실적(법정의무 외)

인권경영 교육 I

대상 부서별 인권담당
 일자 2025. 9. 2. 16:00~17:00
 내용 외부 강사의 인권경영 교육
 방법 대면(집합)
 참석 100%(참여/대상)



인권경영 교육 II

대상 관리자 및 일반직원
 일자 2025. 10. 22. 13:30~14:30
 내용 외부 강사의 인권경영 교육
 방법 대면(집합)
 참석 100%(참여/대상)

교육 후
첨부예정

V. 종합적 평가 • 공개의 원칙 및 소통



1.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38
2. 인권경영 보고방식 4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Gangnam-gu city management corp.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성과 종합평가

인권경영 보고방식

평가지표 제작

“인권경영 활동에 대한 내외부 평가 및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인권경영 종합 진단체계 마련(인권영향평가 외 별도 진단)

- 인권경영 국제표준 및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지침 주요이슈 등 반영

분야	진단분야(인권경영 주요이슈)	진단내용	근거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추진의지 (인권경영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현장(선언문) 및 규정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언문 최고경영자 명의 표명 - 규정 내 인권경영 책임자 명시 •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전략 마련 여부 	인권경영 국제표준 · 인권위 매뉴얼/보고지침
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정책선언 (인권경영 관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현장 상 <인권위 제시 내용>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규범 지지 여부, 비차별, 노동권 보장, 환경권 보장, 강제노동 / 아동노동 금지, 개인정보보호, 구제조치 제공 등 	인권경영 국제표준 · 인권위 매뉴얼/보고지침
실행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력 제고 (인센티브 및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성과 및 참여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여부 • 인권분야 관련 징계규정(징계 양정기준) 마련 여부 	인권경영 국제표준 주요이슈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 구제제도 • 과제 개선도 • 교육 이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실시여부 (매년 / 외부 유효성 검증 포함) • 구제기준 마련 여부 및 개선 활동 • 직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과제 개선 여부 • 인권경영 교육 이수율 (법정의무 교육 외) 	인권경영 국제표준 · 인권위 매뉴얼/보고지침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제도 성과 • 정보공개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제도 운영성과(처리결과, 대표 사례 등) 공개 • 인권경영 정보공개 수준 	인권경영 국제표준 · 인권위 매뉴얼/보고지침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성과 종합평가

인권경영 보고방식

진단결과 및 개선계획

인권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인권경영 종합 진단을 통한 이슈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분야	진단분야	진단현황	개선 혹은 지속 (유지) 계획
체계 강화	•인권경영 추진의지 (인권경영 리더십)	•인권경영 선언문 제정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전략 마련	✓ 국내외 표준 및 국내법 등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인권경영현장(선언문) 정기 점검 지속 실시
운영 관리	•인권경영 정책선언 (인권경영 관리범위)	•인권현장(선언문) 공개 - 인권경영 전용 페이지 내 공개 - 선언문 하단 '기관명의 표명' 필요	✓ 인권경영 선언문 – 기관 혹은 최고경영자 명의로 표명
실행 전략	•실행력 제고 (인센티브 및 제재)	•인권경영 참여독려 및 평가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 •징계양정 기준 강화 필요	✓ 인권경영 정책 추진 시, 실질적 참여증대 효과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중장기 전략)
성과 관리	•인권영향평가 •구제제도 •과제 개선도 •교육 이수율	•인권영향평가 실시('25)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외부 전문가 참여) - 금년 과제 내년까지 개선 완료 예정 •구제기준 마련(구제절차 매뉴얼) 계획 •금년 관리자 포함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이수율(참여인원/ 대상인원) 관리	✓ 인권위 권고 및 클린아이 통합공시 기준에 따라 매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외부 전문가 유효성 평가 포함) ✓ 금년 인권영향평가 과제 개선 이행 후 결과 공개 ✓ 구제절차 매뉴얼 제정 및 구제절차 효용성 평가 실시
정보 공시	•구제제도 성과 •정보공개 투명성	•구제제도 운영성과 일부 공개 •홈페이지 인권경영 정보 공개	✓ 최근 고충처리 등 신고 및 접수·처리결과 공개(발생 시) ✓ 홈페이지 인권침해 신고센터 내용보완 (처리기한 안내)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성과 종합평가

인권경영 보고방식

1. 인권경영 성과 종합 평가

» 인권경영 전체과정 | 성과에 대한 평가

금년성과 및 평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점검 및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중대성 평가를 통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경영 전략 이행



금년성과

- ❖ 인권경영체계 점검
- ❖ 인권영향평가 실시
- ❖ 법정의무 외 교육
- ❖ 신고·구제절차 점검
- ❖ 인권경영 종합진단

- 공단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자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였고, 금년 추진 정책 이행
- 인권경영선언문 및 이행지침을 제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금년에도 인권경영 담당부서 주관 하에 인권경영 정책 추진
-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이 포함된 중대성 평가를 통한 이슈선정 및 과제도출·개선이행 등 인권영향평가 실시
- 대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외 인권침해 신고채널을 점검하고, 의견수렴 등 공급망 관리, 확산 노력 지속 계획
- 인권경영 국제표준 및 국가인권위 보고지침을 반영한 인권경영 종합 진단 실시 및 도출 이슈에 대한 개선 계획 마련

종합평가

- ❖ 인권경영 체계강화 노력
- ❖ 공급망 관리 강화 활동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 실사 지속
- ❖ 구제제도 점검 및 개선

- 국내외 인권경영 기준을 반영한 인권경영 선언문 제정,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신고채널 정비 및 구제절차 효용성 평가 실시,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담당부서 운영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대내외 인권경영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실현
- 향후에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포함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지속발굴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후, 개선성과를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소통 및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인권경영 추진체계·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 교육

종합평가·공개·소통

인권경영 성과 종합평가

인권경영 보고방식

인권경영 보고 공개

국가인권위 보고지침에 따라 작성된 2025년 공단 인권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 내부망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공개

주요 공개 위치



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인권경영 – 자료실/주요활동

<https://www.gncity.or.kr>

인권경영 보고 검증

인권위 보고지침에 따라 작성된 2025년 공단 인권경영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 및 공단 인권경영위원회 내·외부 전문위원의 심의 (외부 전문가 포함) 등 검증과정을 거쳐 공개

내부검증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

- 인권위 보고지침에 따른 보고서 구성안 마련
(인권정책/인권영향평가/구제절차/교육/종합평가)
- 보고서 기본안 작성(세부항목/요구자료/기관현황 등)
- 외부 전문가와의 논의과정을 통한 보고서 초안 마련
- 주관부서 및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부서 등
내부검증 시행

외부검증

외부 전문가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외부 전문가(한국인권경영연구소) 유효성 검증 실시
- 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외부위원 3명 포함)
: 교수, 노무사, 노동인권 전문가
- 검증기준: 인권위 보고지침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도 평가 (90% 이상 총족)
- 검증결과: 일부 보완 계획(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외부 전문가 유효성 검증을 통한 신뢰도 강화

APPENDIX

1. UN이행지침 인권보고 프레임워크 **43**
2. 인권경영 보고 지침 **44**
3. 유효성 검증 의견 **45**

APPENDIX

UN이행지침 인권보고 프레임워크 UN Guiding Principles Reporting Framework

구분	보고원칙	세부내용	보고현황
인권존중을 위한 거버넌스	A1. 인권정책	인권 존중 의지 대외 공개 여부	P. 4~6, 7
	A2. 인권존중 내재화	인권 존중 의지 내재화를 위한 노력	P. 4~6, 7
중점 보고 분야	B1. 주요 인권 이슈 목록	사업활동과 연관된 주요 인권 이슈	P. 19~23
	B2. 주요 인권 이슈 식별	주요 인권 이슈 선정방법	P. 12~20
	B3. 주요 인권 관리 지역	주요 인권 이슈 발생 지역 및 지역 선정 방법	P. 12
	B4. 잠재적 인권 이슈	주요 인권 이슈와 잠재적 인권 이슈	P. 20~23, 27~28
주요 인권 이슈 관리	C1. 주요 인권 이슈를 위한 세부 정책	주요 인권 이슈를 위한 세부 정책	P. 27~29
	C2. 이해관계자 참여	주요 인권 이슈 별 이해관계자의 참여	P. 12~16
	C3. 영향평가	지속적인 주요 인권 이슈 식별	P. 9~29
	C4. 인권 이슈 대응	주요 인권 이슈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활동반영	P. 27~29
	C5. 성과평가	주요 인권 이슈 해결을 위한 활동의 효과성	P. 38~41
	C6. 사후지원	인권 관련 피해자를 위한 사후 지원 활동	P. 27~29

APPENDIX

인권경영 보고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구분	보고원칙	세부내용	보고현황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인권경영 정책 선언	A1.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규정, 책임자, 전담부서, 변동사항	P. 4~6
	A2. 인권정책선언	인권경영선언 및 공표	P. 7
	B1.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	실시계획, 추진절차, 평가팀 구성, 전년도 이슈	P. 9~12
	B2. 주요 인권이슈 보고	인권영향평가 주요과정, 체크리스트 소개	P. 18~23
	B3.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	주요 인권 이슈 및 개선계획	P. 27~29
	B4. 주요 인권이슈의 대응 성과	전년도 이슈에 대한 사후관리	P. 11
구제절차	C1. 구제절차 소개	진정 제기 절차, 진정인 보호 제도	P. 31~32
	C2. 구제절차 운영성과	성과사례, 예방활동 등	P. 33
인권경영 교육	D1. 인권경영 교육체계	지속적인 주요 인권 이슈 식별	P. 35
	D2. 인권경영 교육 운영성과	규정, 전담부서, 전산 시스템, 교육 실적(법정 외)	P. 36
종합평가 공개 원칙 및 소통	E1.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인권경영 전체과정, 성과 종합평가, 과제도출	P. 38~40
	E2. 인권경영 보고방식	인권 경영 보고 및 검증	P. 41
	E3. 보고에 대한 소통 결과	보고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 활동	-

APPENDIX

유효성 검증 의견 한국인권경영연구소

검증 범위 및 기준

-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른 보고원칙(하기 검증범위 내)의 준수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
- 보고서 수록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보고원칙의 세부내용 별 보고현황 유효성 검토

검증 방법

- 인권위 보고 원칙에 따른 세부내용 구성, 보고현황 확인
- 기관현황 조사를 통한 수록 데이터·정보 신뢰성 검증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및 중대성 평가 과정 검토
- 기관 인권경영 담당부서·보고 담당자 인터뷰

검증범위

검증의견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인권경영 정책 선언	인권경영현장 및 규정의 제정·공표, 대내외 인권경영 동향 및 기관현황을 반영한 정기적 인권경영정책의 검토 등이 보고원칙의 핵심입니다. 기관은 인권경영 선언문 및 이행 지침을 제정·공표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내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 등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동향을 반영하여 기준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영향평가	공단은 중대성 평가의 핵심과정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전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 하였습니다. 각 부문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행이 이루어져야 하오니,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완료 후에는 차년도 보고서에 개선성과를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포함된 중대성 평가 과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시행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제절차	공단은 내부 고충처리 제도 외에도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신고채널 및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이해하기 쉽게 홈페이지에는 신고 및 구제 프로세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제제도 강화를 위한 구제절차 매뉴얼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제도 성과 공개에 있어서는 연도별 접수 건수 및 주요 내용, 처리결과, 대표사례 등의 내용으로 보완해 나갈것을 제언 드립니다.
인권경영 교육	국제표준 및 인권위 보고지침에서는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법정의무 외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단은 금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외 인권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층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교육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협력사 등 사업파트너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의 이해 및 구제절차 홍보 등의 교육 및 문화확산 전략을 지속 이행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종합평가 공개 원칙 및 소통	공단은 현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권경영위원회(인권경영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심의는 물론 인권경영 보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외부검증을 통해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공단의 인권경영 홍보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위해 ESG경영 부문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인권영향평가 주요이슈 및 최종 보고사항 등을 홍보하고, 또 다른 이슈나 요구사항은 없는지 경청한 후 필요 시 경청한 후 필요 시 전략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	보고현황에 대한 신뢰성 검토(정보 사실 확인) 결과, 전반적으로 인권위 보고지침 요구사항에 맞게 충실히 작성되었으며, 일부 보완필요 요소(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